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

의안 번호	159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11. 13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20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

- 1)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(시설의 종류, 면적 및 설치비용 등)
- 2)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의 명칭,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, 위치, 규모, 미집행사유, 단계별 집행계획, 개략 도면, 현황 사진 또는 항공 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
- 3) 금회 보고 : 76건(도로 71, 주차장 1, 공원 2, 공공청사 2)

나. 단계별 집행계획

- 1)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: 83건(도로 77, 주차장 1, 공원 2, 공공청사 2, 체육시설 1)
- 2) 단계별 집행계획

- 1단계(3년 이내 시행) : 10건(도로 10)
- 2단계(3년 이후 시행) : 73건(도로67, 주차장1, 공원2, 공공청사2)

3. 근거법규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
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

4. 참고사항

가.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10년이 경과하여 새로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, 보고 후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

나.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

다. 해제절차

1) 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(도시계획시설의 명칭, 위치,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) 제출

2) 해제를 권고 받은 경우 상위계획과의 연관성, 단계별 집행계획, 교통,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

※ 특별한 사유 :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함